GANGJIN
Web
Contents

목차

목차 2
기초생활수급 3
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요 3
급여종류 및 지원액 3
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3

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요

- 지원대상 : 근로능력 여부 ·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
- 신 청 인 : 수급(권)자 · 친족 · 기타 관계인, 공무원 직권신청(동의필요)
- 신청장소 : 읍·면사무소 주민복지팀
- 신청기간 : 연중
  ※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
  - 고소득(연1억 세전) 고재산(9억, 금융재산 제외) 부양의무자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
- 선정기준 : 소득인정액 기준 + 부양의무자 기준 ※ 교육급여,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하지 않음
- 교육급여 :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·수업료·교과서대·부교재비·학용품비 지급
- 해산급여 :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
- 장제급여 : 수급자가 사망 시 1인당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
- 기타 문의사항 : 읍·면사무소 주민복지팀, 군청 주민복지과 430-3182~5

급여종류 및 지원액

구분	선정기준	지원내용
생계급여수급자	기준 중위소득 30%	생계급여액 = 중위소득 30%수준- 소득인정액
의료급여수급자	기준 중위소득 40%	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,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
주거급여수급자	기준 중위소득 47%	임차가구 : 임차료 지급(상한선 기준) 자가가구 : 주택 개보수 지원
교육급여수급자& 차상위	기준 중위소득 50%	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대, 부교재비, 학용품비등 교육활동지원비

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금액 (원/월)	2,077,892	3,456,155	4,434,816	5,400,964	6,330,688	7,227,981	8,107,515

- 조사내용 :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· 재산, 부양의무자 유무,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,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· 취업상태 · 자활욕구 · 주택현황(LH시행) 등
- 신청 시 제출서류
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신청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임대차계약서(해당자 만) 등

- 기타 문의사항 : 읍.면사무소 주민복지팀, 군청 주민복지과 430-3182~5

COPYRIGHT ⓒ GANGJIN-GUN. ALL RIGHT RESERVED.

GANGJIN

Web Contents